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보고

가. 제안일자 : 2002. 1. 1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2. 1. 1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전설교통위원회(2002. 1. 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제안이유

○ 기존 4층 이상 공동주택에 1개의 계량기가 설치됨으로써 공동요금 부과로 인해 주민 간의 마찰 등 불편요인이 있어, 시민의 상수도요금 개별납부가 가능도록 계량기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공동주택 등에 호별 계량기 설치 도입에 따른 정의 신설함(안 제2조)

○ 호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을 규정함(안 제9조)

○ 시설부담금 규정이 명확지 않은 주거겸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설분담금 산정을 정함(안 제12조)

○ 급수에 필요한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 조례개정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도 개별납부가 가능한가? ○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해야 하는데 시에서 지원할 계획인가? ○ 상가건물도 포함되는가? ○ 주택만 개별 납부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 검침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고지분부터 시행될 것임 ○ 주민이 요구하면 전부 가능함 ○ 수용자 부담으로 시에서는 지원이 없음 ○ 주택만 해당됨 ○ 주택만 해도 계량기가 약 2만2천개가 늘어남. 검침요원이 한정되어 있어 현재는 주택만 하는 것임 ○ 현재 추진 중에 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59호
의결년월일	2002. 1. 19 (제93회)

제출년월일 : 2002. 1. 10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기존 4층 이상 공동주택에 1개의 계량기가 설치됨으로써 공동요금 부과로 인해 주민 간의 마찰 등 불편요인이 있어, 시민의 상수도요금 개별납부가 가능하도록 계량기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공동주택 등에 호별 계량기 설치 도입에 따른 정의 신설함(안 제2조)
- 호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을 규정함(안 제9조)
- 시설부담금 규정이 명확지 않은 주거겸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설분담금 산정을 정함(안 제12조)
- 급수에 필요한 수도계량기의 구경을 시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수도급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5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복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인입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6.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전용 계량기"라 함은 전용 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9. "통합 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 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겹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점검 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 계량기를 말한다.
11. "점검 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등에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호별 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급수장치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전용 계량기, 통합 계량기 및 점검 계량기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호별 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 ④전용 계량기, 통합 계량기 및 점검 계량기에서부터 건물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피해 방지, 동파 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제2항 중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통합 계량기"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타 용도와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되었으며, 호별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건축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설치위치는"을 "설치위치 및 구경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4. (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p> <p>1.~4. (현행과 같음)</p> <p>5.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인입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p> <p>6.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p> <p>7. “호”라 함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p> <p>8. “전용 계량기”라 함은 전용 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p> <p>9. “통합 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겸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p> <p>10. “호별 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겸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점검 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 계량기를 말한다.</p> <p>11. “점검 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등에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호별 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p>
<p>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생략)</p> <p>②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p>	<p>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현행과 같음)</p> <p>②급수장치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전용 계량기, 통합 계량기 및 점검 계량기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p>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호별 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④ 전용 계량기, 통합 계량기 및 점검 계량기에 서부터 건물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피해 방지, 동파 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생략)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겸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겸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생략)

(신설)

제12조(시설분담금) ①(현행과 같음)

② 톱
화 계량기
.....
.....
....

③(현행과 같음)

④ 타 용도와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되었으며, 호별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건축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생략)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 설치위치 및 구경을